

제332회 시의회 임시회
도시계획균형위원회

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2025. 9.

도시공간본부

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도시공간본부

□ 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	토지관리과
2	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즉각적 대응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	토지관리과

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1.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(토지관리과, '25. 6. 5.)	<input type="checkbox"/> 현 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하나,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에 대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부재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행령 미비로 상호주의 원칙이 사실상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호주의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신설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7조(상호주의) 	국토교통부
2.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즉각적 대응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(토지관리과, '25. 6. 5.)	<input type="checkbox"/> 현 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에 대한 조사 권한 및 정보 접근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등 광역단체는 조사 및 자료 접근 권한이 없어, 부동산 이상거래, 허위신고, 편법 증여 등 교란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움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역단체에서 조사 및 자료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하여 부동산 시장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조사주체(國-市-區)의 다원화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, 제24조 	국토교통부